의 안 번 호	제3676호

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오강현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2. 제안이유

❍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 및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
다. 아동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공고(안 제5조)

라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, 시설물 설치 등(안 제6조~제7조)

마. 사업의 추진,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(안 제8조~제9조)

바.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(안 제10조~제11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